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영장주의 적용 및 국회의 통제 등 >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51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3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5
3.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제한 및 파기 등 사용 제한	15
4.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국회의 통제	20
 [참고 1]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2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9.

다.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

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통신이용자정보’¹⁾ 제공 제도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²⁾에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아이디, ⑥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됨.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통신일시 및 발·착신 번호 등 구체적인 통신행위에 관련된 정보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³⁾와 구분되는

1) 2023.12.29.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자료”라 칭함.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3)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개념임.

‘통신이용자정보’의 경우에는 법원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수사기관 등의 실무적인 협조요청만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교 >

구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등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공범위	이용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특정인의 통신사실 자료 - 가입자의 통신일시, 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사용도수,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정보통신기기 접속지 위치추적자료
요청주체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사전절차	-	- 검사·사법경찰관: 법원 허가 - 정보수사기관: 고법수석부장판사 허가
사후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 가입자에게 통지(23.12.29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 가입자에게 통지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개정안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 등’이라 함)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3항 등).

[illegible]

수 있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다.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 검사가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

<신 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

아야 한다.

⑥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로 법원
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⑧

제7항

⑨ _____

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제5항</u> 에 따른 대장에 기 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 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 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 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 ----- <u>제7항</u> ----- ----- ----- ----- ----- -----.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u>정보제공요청서</u> 에 대한 결재 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u>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u> ----- ----- -----.

□ 검토사항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별도의 사전적 절차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법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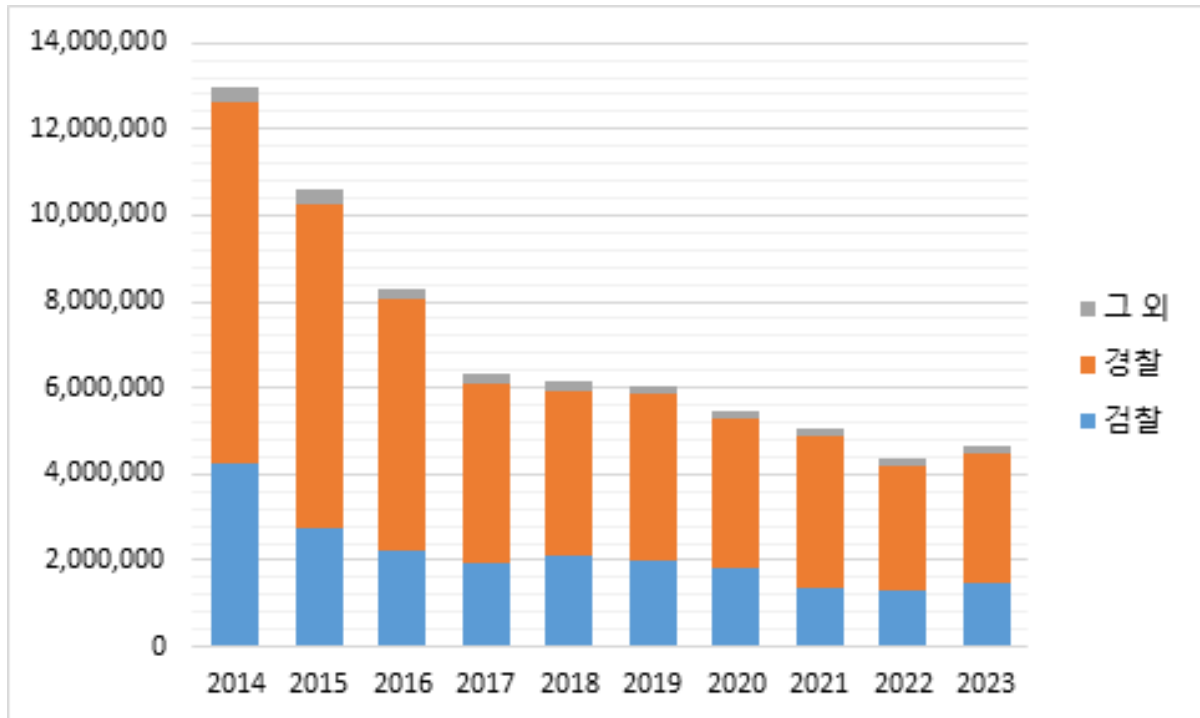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등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과 통신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수사기관 등은 견제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건 수는 2014년 1,296만 7,456건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로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약 463만건으로 단순수치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수의 9%에 해당함.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

(단위: 전화번호 수)



주: 그 외는 국정원, 공수처, 기타기관에게 제공한 건수를 합산한 것임

자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논의와 향후과제, 2024.10.2.

-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조회 메시지를 받게 됨에 따라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장은 2024년 8월 23일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해당 정보의 요청 요건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⁵⁾

- 다만, 통신이용자정보의 영장주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그 입법례⁶⁾를 찾기가 어렵고, 영장주의에 대한 21대 국회의 논의내용과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⁷⁾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장주의의 전면적인 도입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수사기관 등에서 신속한 사건 수사 필요성과 행정비용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사기관의 의견과 현재 판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5)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절차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48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 6) 경찰청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영장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독일 : 문서 제출명령, △영국 : 서면요구, △프랑스 : 영장 없이 제공 요청, △일본 : 사실조회)
 - 7)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은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 있으나, 통신자료 요청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를 부과하거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7.21)

<제21대국회 과방위원회 법안소위('23.12.6) 시 논의 내용>

영장주의 찬성 입장	영장주의 반대 입장
-통신자료 또한 보호해야 될 통신비밀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적 자료제공 요청은 부적정 (강제처분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하며, 무분별한 조회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함. -적법절차 없이 수사기관이 내용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통신자료 요청행위가 강제력이 없다고 하나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 -통신이용자들 입장에서조차 사업자의 임의적 결정으로 자기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곤란함.	-피의자 조사 시 통화상대방 확인과정에서 통신자료 요청이 불가피하고, 피조회자가 범죄 조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사항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임. -통신자료 요청의 오남용 우려에 대하여, 해당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로 수사 실무에서 활용되는 예가 매우 적음. -연 600만건을 영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요 선진국 중 통신자료에 대해 영장주의를 채택한 사례 없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남용 방지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수사 관계기관의 의견과 현재 판결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통신이용자정보는 대상자 특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헌법재판소도 통신자료 요청 관련 규정을 임의수사로 보고 있고, 지금도 관서장 결재 및 대상자 통지와 같이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영장 도입 시 과도한 업무 부담 및 수사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요청 제한은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어렵게 하여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

- 국세청은 범죄를 조사하는 경우에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상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원의 허가 절차를 도입할 경우 조사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행정비효율이 발생하며 적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자료를 기반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조치를 수행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활동 초기 단계에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로 범죄수사의 요청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영장주의 도입시 과도한 인력 및 자산이 추가되어 정보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입장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판, 범죄 수사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 등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 수사지연으로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 및 과기정통부 등의 신중검토 의견, 사전적·사후적 통제 수단의

효과성, 각 수단 간의 정합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 등과의 연계성, 해외 법제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법원 허가절차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제한 및 파기 등 사용 제한

- 개정안은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당사자에게 통지된 사용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 5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5(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제한 등)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u>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검토사항

-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계속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시부터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여 추가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때에도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며,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인 달성된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보유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견제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계속된 바 있으므로, 수사기관등의 통신이용자정보 보유에 대해서도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 8)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9),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형법」 10) 등에 금지와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하여서는 요청시부터 정보 보유기간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를 저장·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11)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특수성에 비추어 조회자료를 장기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수사·정보기관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법안 논의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타 입법례¹²⁾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자료에 대해 보유·이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경찰청은 범죄종류에 따라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보유·이용기간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정보 파기 규정도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임.

국가정보원 역시 국가안전보장을 수호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일반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어 조회자료를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커 사전에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 종합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보유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중복규제 가능성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일률적으로 보유기간 등을 특정하여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국회의 통제

-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국회 상임위 등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3조의6(국회의 통제)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지유예 통보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u> <u>② 대행기관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수사목적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등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등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대행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적인 통제를 하려는 것임.

- 그동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수사기관 등은 견제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계속된 바 있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언론인·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의 사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수사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해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를 규정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및 통지유예의 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이러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중요한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지 및 통지유예의 통보 주체는 수사기관이므로 이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고, 수사

기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는 대상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개인정보 등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및 유출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통신이용자정보 내역까지 보고시 정보기관의 대응활동 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보고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가 아닌 「국회법」 제54조의2¹³⁾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대행기관에 불과한 본인들은 수사기관 등의 위탁에 따라 단순 수탁자 지위에서 해당 자료들을 관리할 뿐, 국회 제출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며, 통신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일체 관리 권한은 수사기관등이므로 해당 자료들의 국회 제출의무는 대행기관이 아닌 수사기관등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13)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종합해 보면, 통신이용자정보 남용에 대한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보유 및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등도 수사중인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

I.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에 해당하는 이용자 정보
-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로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

□ 총괄 현황

- '23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12,642건, 문서 수 기준으로 548,792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917건(2,216,559→2,212,642건) 감소, 문서 수 기준 35,784건(513,008→548,792건)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4.0개, 전년 동기(4.3개)대비 0.3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5,944건(745,746→739,802건), 기타기관(고용노동부, 관세청, 식약처 등) 6,354건(65,242→58,888건)이 감소했고, 경찰 3,979건(1,398,423→1,402,402건), 국정원 3,699건(7,054→10,753건), 공수처 703건(94→797건)이 각각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검찰 5,209건(75,434→80,643건), 경찰 28,403건(407,696→436,099건), 국정원 271건(1,017→1,288건), 공수처 45건(42→87건), 기타기관 1,856건(28,819→30,675건)으로 모두 증가

(단위 : 건)

구 분		'22년		'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559,874	745,746	739,590	739,802
	문서수	65,240	75,434	80,371	80,64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8.6	9.9	9.2	9.2
경 찰	전화번호수	1,497,728	1,398,423	1,598,713	1,402,402
	문서수	387,901	407,696	457,975	436,09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9	3.4	3.5	3.2
국정원	전화번호수	5,483	7,054	10,563	10,753
	문서수	941	1,017	1,311	1,28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5.8	6.9	8.1	8.3
공수처	전화번호수	23	94	1,665	797
	문서수	9	42	177	8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6	2.2	9.4	9.2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59,819	65,242	68,137	58,888
	문서수	28,475	28,819	30,976	30,67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1	2.3	2.2	1.9
합 계	전화번호수	2,122,927	2,216,559	2,418,668	2,212,642
	문서수	482,566	513,008	570,810	548,79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4.4	4.3	4.2	4.0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유선전화 1,730건(18,598→16,868건) 감소, 이동전화 24,242건(464,868→489,110건), 인터넷 등 13,272건(29,542→42,814건)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2년		'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18,676	18,598	18,988	16,868
이동전화	436,154	464,868	515,069	489,110
인터넷 등*	27,736	29,542	36,753	42,814
합 계	482,566	513,008	570,810	548,792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